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신고 전 서비스·안전 교육 수료 의무화(안 제49조제1항제3호 신설)

가. 개정 이유

- 농어촌민박업 신고 후부터 교육을 시행하기 전까지 서비스·안전 교육을 수료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함

나. 개정 내용

- 농어촌민박업을 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업 신고 전에 서비스·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그 수료증을 농어촌민박 신고 시 제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서비스·안전교육을 수료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이 없도록 방지하여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없음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2. 소방·안전교육시간 연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(제49조의2제2항 개정)

가. 개정 이유

- 소방·안전교육시간을 확대하여 안전에 관하여 더 상세하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나. 개정 내용

- ·안전, 식품위생,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각 1시간씩 시행하던 것을 소방·안전 2시간 및 식품위생과 서비스를 1 시간 교육하도록 변경 (총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변동없음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농어촌민박 안전교육 시간확대로 실효성있는 교육 가능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없음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3. 농어촌민박 서비스·안전교육 일정 공지(안 제49조의2제3항 개정)

가. 개정 이유

- 농어촌민박의 서비스·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나. 개정 내용

- 농어촌민박의 서비스·안전교육 한해 일정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지하도록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농어촌민박 서비스·안전교육 일정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높아짐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없음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4. 농어촌민박사업의 안전시설기준 강화(안 별표3 개정)

가. 개정 이유

- 소비자의 농어촌민박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으며, 주택에서 하는 사업으로 안전기준이 다른 숙박업에 비해 완화되어 있어 안전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음

나. 개정 내용

- 일산화탄소경보기, 가스누설경보기, 자동확산소화기, 휴대용비상조명등, 피난유도등이나 표지, 완강기 등 설치 의무화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지고,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없음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5. 농어촌민박 서비스·안전기준 개정(안 별표3의2 개정)

가. 개정 이유

- 새롭게 설치 의무화되는 안전시설에 관한 관리기준을 정하고, 화재위험이 높은 난방시설이나 화기취급처에 대한 안전기준을 추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

나. 개정 내용

- 휴대용비상조명등, 일산화탄소경보기 등 안전시설을 작동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할 것
- 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에는 환기가 잘 되도록하고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말 것 등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없음